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
----------	---

제출년월일 : 1998. 4.18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의 지방세제지원 및 종전감면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 소유차량의 면제범위를 종전 2천씨씨이하인 승용차에 한하여 감면하던 것을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를 추가확대함.(안제2조제2항)
-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의 용도를 현행 보철용자동차에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로 확대함.(안 제2조제2항)
- 국가유공자의 1가구 2차량 제외 대상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포함 규정 신설함.(안 제2조제3항)

3.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
- 내무부준칙[세제13400-1704(97.12.30)],[시세무13400-477('98.2.18)]
시달로 허가가름
-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한) 제2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p> <p>①(생략)</p> <p>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p> <p>①(현행과 같음)</p> <p>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p> <p>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p>

현행	개정안
<p>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p>	<p>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p>
<p>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p>	<p>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p> <p>4. 이륜자동차</p>
<p><신설></p>	<p>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p>

현행	개정안
	<p>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p> <p>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p>